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38호 2026. 9. 23.(수)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광양시 공고 제2026-2077호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광양시 공고 제2026-2078호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1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1
광양시 고시 제2026-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2
광양시 고시 제2026-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3
광양시 고시 제2026-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54
광양시 고시 제2026-233호	광양시 도로명 부여 고시	55
광양시 고시 제2026-2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0
광양시 고시 제2026-2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1
광양시 고시 제2026-2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2
광양시 고시 제2026-24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63
광양시 고시 제2026-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5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의 “광주광역시 규칙”과 “전라남도 규칙”을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으로 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광주감사담당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2-613-2216, 팩스 062-613-2219, 전자메일 cyh31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21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계획』에 따라 농업기계 예약제에 맞추어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임대자격 및 우선순위, 예약제, 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세분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으로 동 조례 제정 목적 실현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임대자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용료,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 전화: 061-797-3378, FAX: 061-797-2596, E-mail: bdlm83@ko 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현행조례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등의 농업기계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사업”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용으로 보유·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농업경영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장”이란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시장이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소: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
2. 분소: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

② 시장은 지역 여건,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소 또는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대사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필요한 농업기계 전문인력과 예산·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장에 보유·관리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기,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새로운 농업기계를 도입할 때에는 지역, 작목, 성별에 따른 작업 특성,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반영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용 농업기계의 임대
2. 임대용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교육
3. 보유·관리하는 농업기계의 정비 및 보관
4.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대자격 및 우선순위) ① 농업기계의 임대 자격은 광양시 내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2.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3. 광양시 외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② 시장은 예약이 아닌 당일 임대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우선대상자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착기, 스kid로더 등)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해복구, 병해충 방제, 공익적 공동작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면허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제7조(예약제 운영) ① 농업기계 임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임대사업장에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당일 임대신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출고가능한 임대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약의 접수, 배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재해복구, 병해충 방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정 농업기계에 대한 동일인의 연속 또는 반복 예약으로 독점 사용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임대신청 방법 및 사용 허가) ① 예약을 통한 임대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통한 임대신청의 방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당일 임대신청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농업기계의 종류, 사용 목적, 유지보수 상태, 안전사용 교육 이수 여부 및 농번기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가족 등 대리 사용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대리 사용자의 범위, 지정 절차,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임차인은 시장의 사용 허가 조건에 동의하고, 1인 또는 1개 농업경영체당 1일 1종 1대를 기준으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



농 규모, 작업 공정 또는 기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5대의 범위에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최초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24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3일 이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의 연장은 대기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고 예정시각 4시간 전까지 1회 1일씩 최대 2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임대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대기간의 연장 방법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기계는 입고 예정시각 내에 임대사업장으로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운송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임대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농업기계는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출고한다. 다만, 연장 사용료는 입고 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을 통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종별 사용료는 시장이 매년 고시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장의 휴무 등 운영 사정으로 입고 예정시각에 임대 농업기계를 입고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임대 농업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 등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장이 재난복구, 병해충 방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감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



로 정한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입고기한을 초과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 제한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편도 1km당 1,000원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송서비스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운송서비스의 대상 임대 농업기계, 운송 예약, 신청, 변경 및 취소방법, 운송지역, 인수·인계 절차 및 제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인력 및 장비, 도로 여건, 기상 상황, 안전상 위험 등으로 운송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임차인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고 및 입고 시 담당 직원과 함께 임대 농업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할 것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 농업기계를 관리하고, 광양시 내에서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3.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시장의 안내사항을 지킬 것

4.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5. 정상적인 마모 또는 소모성 부품은 제외하고 입고 시 원상회복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대사업장에 입고할 것

6. 사용 후에는 청결히 세척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출고 시 기준 연료량으로 보충할 것

7. 고장, 사고 또는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신고할 것

②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는 임차인 또는 대리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임대제한)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농업기계를 파손·망실하거나 그 밖에 임대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수리비, 부품비, 운반비 등 손해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로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출고·입고 점검 등) 시장은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등)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실적, 사용현황, 수입금, 정비이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임대사업의 운영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사용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임대 농업기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대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손해배상, 임대제한 및 그 밖의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4항 관련)

1.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경 비율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3. 농산물 선별기 중 콕정선기의 경우에는 사용시간, 처리물량 또는 사용방식 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료 기준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임대제한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임대 농업기계 세척이 불량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5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10일 제한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 및 입고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0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20일 제한
3.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일 및 예약시각에 출고하지 않는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0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20일 제한
4. 출고 시 기준 연료량으로 보충하지 아니하고 입고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5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제한
5. 안전수칙 위반으로 수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2개월 제한
6. 안전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안전장치를 훼손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7. 임대 농업기계를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운행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8. 임대한 농업기계를 허가 없이 관외로 반출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9. 임대한 농업기계를 영리 영업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대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10.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신청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11. 임대 농업기계의 부품을 허가 없이 탈착했거나 개조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2. 사용료, 연장 사용료 및 운송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3. 임대한 농업기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망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4. 안전운행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가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비고

제4호, 제5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시장은 위반 정도, 변상 여부 및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임대제한을 감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정) 2007.07.04 조례 제 731호

(일부개정) 2008.11.26 조례 제 931호

(전부개정) 2011.03.30 조례 제1072호

(전부개정) 2015.11.25 조례 제1395호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1462호

(일부개정) 2019.10.02 조례 제16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발작물 임대사업장 포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동부):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진상면 농업인상담소 내) [전문개정 2019.1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양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 ② 임대사업장 수입금은 수입일 다음 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수입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개시 일에 입금해야 한다.
- 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내구연한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 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사용요령 사전교육
 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 ④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삭기·스키드로더·지게차 등)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19.10.2.>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 ①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 ②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사



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까지를 1일로 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기계 점검과 시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

⑥ 임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사용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용 신청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

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편도 1km 당 1,000원으로 한다.

④ 운반 기종은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없는 기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 굴삭기
2. 소형 트랙터-31
3. 스키드로더
4. 스피드스프레어



5. 승용 이앙기

6. 원거리 방제기

7. 중형 트랙터

8. 퇴비 살포기(궤도)

9. 퇴비 살포기(승용)

10. 잔가지파쇄기 [본조신설 2019.10.2.] [중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

제10조(사용료 등)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9.10.2.>

②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인 증기 날인방식으로 징수한다.

③ 임차 사용 후 반환 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 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2조는 제14 조로 이동 <2019.10.2.>]

제13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 ③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4.> [제11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19.10.2.>]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
- ②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
- ③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개정 2019.10.2.>
 1. 청소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2. 임대 농업기계 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3.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9.10.2.>

[제12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0.2.>]

제15조(사용료 감면)

- ①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하지 않는다.
 1. 사회적 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 사용료 2분의1 감경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3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0.2.>]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0.2.>]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0.2.>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10.2.>
3. 삭제 <2019.10.2.>
4. 폐 농업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계 처리방안
5. 제1호,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2019.10.2.>]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19.10.2.>]

부칙(전부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1호,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에 따라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조례 전부개정에 맞추어 대상 시행규칙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대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예약의 방법 및 순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사용료의 관리,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임대제한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0일)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 전화 061-797-3378 FAX 061-797-2596, e-mail: bdl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현행규칙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신청) ① 임차인은 본인 확인, 경작사실 확인, 필요한 경우 면허 보유 여부 및 안전사용 교육 이수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약의 방법 및 순위) 농업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의 예약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최종 접수 완료된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일 임대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4조(예약의 변경 및 취소) ① 예약자는 예약의 변경 및 취소를 원하는 경우 임대 농업기계 예약 시각 전까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2. 임대기계 고장
3. 재해복구 또는 긴급 병해충 방제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오류 또는 입력 착오 등으로 중복예약이 발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기종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초 사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합산 6일 이상 반복 예약하여 독점하는 경우

제5조(사용 허가 및 출고) ① 임대사업장 관리자는 임대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임차인에게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농업 기계는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출고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리 사용자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 사용자의 범위는 임차인의 가족, 고용된 농작업 종사자 또는 그 밖에 안전사용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대리 사용자는 해당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운전 또는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3. 대리 사용자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고 전 대리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4. 대리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를 영업행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용료의 관리) 사용료 및 운송료의 납부 방법과 수입금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장 휴무일 전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16시 이후 출고하고 입고일이 휴무일인 경우 입고 예정시각부터 다음 정상 근무일 오전 10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장 휴무일 전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16시 이후 출고하고, 출고일부터 입고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휴무일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의 정도, 실제 사용 여부 및 사용 불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임대기계 출고 전에 사용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료의 면제 또는 반환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공적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기계결함 등으로 공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곤란한 때에는 조례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영상, 정비기록, 재난문자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운송서비스의 운영기준 등) ① 운송서비스의 운송 순위는 제3조에 따른다.

② 운송서비스 대상 농업기계는 자체 운행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운송이 필요한 기종으로서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임대 농업기계로 한다.

③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차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임대 농업기계 예약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송서비스 지역은 광양시 관내로 한정한다.

⑤ 예약의 변경 및 취소는 제4조에 따른다.

⑥ 운송료의 관리는 제6조에 따른다.

⑦ 운송거리는 임대사업장과 농업기계 인도장소 간의 최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제7항의 거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자지도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운송서비스의 인수·인계) ① 임대 농업기계 운송 시 인도장소는 안전사고 우려가 없고 운송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한 장소로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운송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임대 농업기계를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회수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외관상태, 작동상태 및 부속품 등을 상호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전자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 및 망실 등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① 농업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대 농업기계 출고 전 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시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 장애인 등: 1시간 이내

2. 출고 전 교육으로는 정상적인 운전 및 조작이 불가능한 자: 1시간 이내



3.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임대 농업기계 고장을 일으킨 자: 회당 1시간 이내

④ 특별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대물 사고를 발생시킨 자: 3시간 이내

2.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대물 및 대인 사고를 일으킨 자: 8시간 이내

⑤ 안전사용 교육은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전화, 문자, 동영상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시교육과 특별교육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5항에 따른 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미이수에 대한 임대제한은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⑧ 시장은 안전사용 교육 이수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절차) ① 임대사업 담당자는 농업기계의 손상, 망실 등을 확인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물품의 상태,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 정도, 부품비, 수리비, 견인비용 및 보험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배상사유, 배상금액 및 배상기한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 담당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구상 또는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임대제한의 절차) ① 임대사업 담당자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사실, 적용기준, 예정되는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진, CCTV, 정비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 담당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임대제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장의 비치 및 관리) ① 관리자는 임대 농업기계 신청, 출고·입고, 수입금, 정비, 안전사용 교육 이수, 운송서비스 및 사고처리 현황 등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 현황				
기 종 명		출 고	출 고 일	월 일 시
관리번호			출고 확인자	
임대기간	일간	입 고	입 고 일	월 일 시
			입고 확인자	
사 용 료		확 인		
	☐ 현금 ☐ 카드 ☐ 이체			

1. 성 명 : _____
2. 주 소 : _____
3. 연 락 처 : _____ (휴대전화 : _____)
4. 생년월일 : _____ (남, 여)

<임대차 계약조건>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시는 원상회복을 한다.
- 임대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반환한다.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 조건을 위반시 임대
를 제한한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출생연도, 연락처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 _____ (서명)

20 . . .

광 양 시 장 귀 하

(뒤)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점검 및 안전교육 확인서

농업기계명 :

사 용 기 간 :

주요사항 및 교육 내용	확인
○ 출고 전 기계에 대한 이상 유무는 확인하였습니까?	
○ 해당 기종에 대한 사용방법(운전, 조종) 교육을 받았습니까?	
○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사용 및 주의사항 교육을 받았습니까?	

상기 기종을 임대함에 있어 출고 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자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서명)

20 . . .

광양시장 귀하



농업기계 대리 사용 신청서

접 수 번 호		출 고 일	
접 수 일 자		입 고 일	
농업기계 현황	기 종 명		
	관 리 번 호		
임차인 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010-	
대리 사용자 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010-	
	임차인과 관계	□가족 □고용 종사자 □기타()	
대리 사용자 지정 사유	☐ 고령 ☐ 장애 ☐ 질병 ☐ 농작업 종사자 활용 ☐ 기타()		

◆ 확인사항

1. 대리사용자는 해당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운전·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 대리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3. 대리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겠습니다.
4.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농업기계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6. 시장이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대리사용자를 지정하고자 신청합니다.

임 차 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사용자 : (서명 또는 인)

20 . . .

광 양 시 장 귀하



손해배상 통지서

문 서 번 호			담 당 부 서		
통 지 일 자			담 당 자 처 (연락처)		
농업기계 현황	기종명(관리번호)				
	사 고 내 용				
	임 대 기 간				
	사고 발생 일시		년 월 일		
손해배상의무자	성 명(법 인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증)		년 월 일 ()		
	주 소				
	연 락 처		010-		
손해발생내용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 배상금 납부 안내

- 1. 배상금액: 금 원
- 2.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카드납부 ☐ 기타
- 4. 납부계좌:

◆ 의견제출 안내

귀하는 본 손해배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년 월 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정 처리됩니다.



임대제한 사전통지서

문 서 번 호		성 명	
시 행 일 자		연 락 처	
주 소			
◆사전통지 내용 귀하가 임대한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별표2,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임대제한 처분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	임대기종(관리번호)		
	임 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반 일 시	년 월 일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적 용 기 준	조례 별표2 제 호	
	증빙자료	☐ 사진 ☐ CCTV ☐ 점검 기록 ☐ 사고보고서 ☐ 기타	

◆ 사전통지 내용

- 가. 처분종류: 농업기계 임대제한
- 나. 제한기간: 일(개월·년)
- 다. 제한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라. 처분사유:

◆ 의견제출 내용

- 가. 제출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 나. 제출방법
☐방문 제출 ☐우편제출 ☐팩스제출 ☐전자문서 제출
- 다. 제출처
 - ▶ 부서명: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전화: 061) 797-3378
 - ▶ 주 소: 광양시 서천변로 177(2층) ▶ 팩스: 061) 797-2596

◆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예정된 임대 제한 처분이 확정·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임대 제한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교 육 구 분	☐ 정기교육 ☐ 수시교육 ☐ 특별교육		
교 육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교 육 장 소			
교 육 시 간	___시간		
교 육 방 법	☐ 대면 ☐ 서면 ☐ 전화 ☐ 문자 ☐ 동영상 ☐ 기타()		
대 상 기 종			
교 육 강 사			
교육내용	☐ 농업기계 안전수칙 ☐ 작업 전·후 점검요령 ☐ 농업기계 운전 및 조작 방법 ☐ 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 도로주행 및 운반 시 안전수칙 ☐ 보호구 착용요령 ☐ 기타 		

위 사람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사용료, 운송료 반환청구서

청 구 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임대 기종명				
사용료(운송료) 납부액		원		
반환 청구액		원		
반환 청구 사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성명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일 시		출고일		입고일
농작업장 주소지				
농업기계 명			운반 차량	
운 반 비		원	운반 거리	km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정) 2007.07.04 규칙 제 458호

(전부개정) 2011.03.30 규칙 제 588호

(일부개정) 2014.10.01 규칙 제 682호

(일부개정) 2015.11.25 규칙 제 726호

(일부개정) 2019.10.30 규칙 제 8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차 및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30.>

② 농기계를 임차 및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고 전까지 광양시장이 고시한 사용료 및 운반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9.10.30.>

[제목개정 2019.10.30.]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양시장은 즉시 농기계를 반납토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25.]

제4조(대장 및 장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철저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1.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6.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세외수입 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9.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각 호 전부개정 2015. 11. 25.]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전문개정 2011.3.30. 규칙 제58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임대료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4. 10. 1.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1. 25.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호, 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

일련번호 :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 현황				
기 종 명		출	출 고 일	월 일 시
관리번호		고	출고 확인자	
임대기간	일간	입	입 고 일	월 일 시
		고	입고 확인자	
임 대 료		확 인	작업 면적	평
	사다리:		임대용 농업기계 보험	☐ 가입 ☐ 미 가입
	현금 ☐ 무통장 ☐		비 고 :	

1. 주 소 :
2. 성 명 :
3. 전화번호 : (핸드폰 :)
4. 생년월일 : (남, 여)

<임대조건>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차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분실·훼손 시는 원상회복을 한다.
- 임대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반환한다.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각 호와 제14조제3항의 해당 조건을 위반 시 1차 경고, 2차는 3개월간 임대를 제한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활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20 . . .

광 양 시 장 귀 하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

기종별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감면사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농업기계
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핸드폰 :)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25.>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

연번	신 청 자			기종명	대여 기간	입출고일		사용료		결 재		
	지 역	성 명	주 소			출고	입고	금액	누계	주무관	팀장	과장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

물 품 명				구 입 일 자	20 년 월 일	
물 품 관 리 책 임 자	소 속			담 당 자 성 명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내구연한
사 업 명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용 장비					
보 관 장 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 본소 ☐ : 분소 ☐					
물 품 용 도	농업기계 임대용					
회 계 명						
구 입 업 체 (A/S업 체)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임대 농업기계 수리 내역

수리 년 월 일	농업기계 수리 내역 현황			고장 발생 원인 및 내역	
	물 품 명	수 량	금액(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광양시장 본소(봉강면) : 061)797-3433 본소(진상면) : 061)797-3533	주 소	광양시
	성 명	
	전화번호	

임대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		
사 용 료	금 원		

농업기계 사용 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m ² (평)

임대차계약조건

1.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6.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임차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변상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9. 임차인이「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임대차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추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 대 인 : 광양시장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입 · 출고 점검표

1. 농업기계명 :

관리번호 :

2. 사용기간 : 2015-00-00 ~ 2015-00-00

순번	점검목록	출고점검		입고점검		비 고
		(사용자)		(관리자)		
1	볼트너트조임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2	오일누유 유무	정상	불량	정상	불량	
3	각부 장력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4	체인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5	벨트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6	베어링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7	V폴리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8	타이어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9	전기 배선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10	세척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11	안전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정상	불량	
12	기계작동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대여부속품 :						
특기사항 :						

붙임 :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사진 1부

사용자는 임차에 필요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였고, 출고 후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20 년 월 일

사용자주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번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출 고 확 인:

입 고 확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전 사진대지

임대 전 세척 상태	부속품 유지 상태	본체 유지 상태	기타 부위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5. 11. 25.>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

NO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위반 내용	제재 사항		결 재		
					1차 경고	3개월 정지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10.30.>

고 지 서

[illegible]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일 시	출고일		입고일	
	농작업장 주소지				
	농업기계 명			운반 차량	
	운 반 비	원		운반 거리	km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9.10.30.>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

연번	신 청 자				기종명	운반 거리 (km)	운반일		사용료		결 재		
	지 역	성 명	성별	주 소			출고	입고	금액	누계	주무관	팀장	과장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중동)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03-18 외 2필지 일원
	면적	0.384㎡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전신주 4본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1. 12. 31.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2 외 2필지 일원
	면적	약 1.25㎡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전신주 5본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1. 5. 21.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인덕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중동)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59-16 일원
	면적	약 0.081㎡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한전주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1. 11. 26.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중동)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덕레리 1555 일원
	면적	약 0.48㎡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전신주 2본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2. 9. 27.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 2026 - 233호

광양시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6. 9. 18.
2. 고시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6건(붙임 조서 및 현황도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 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고 시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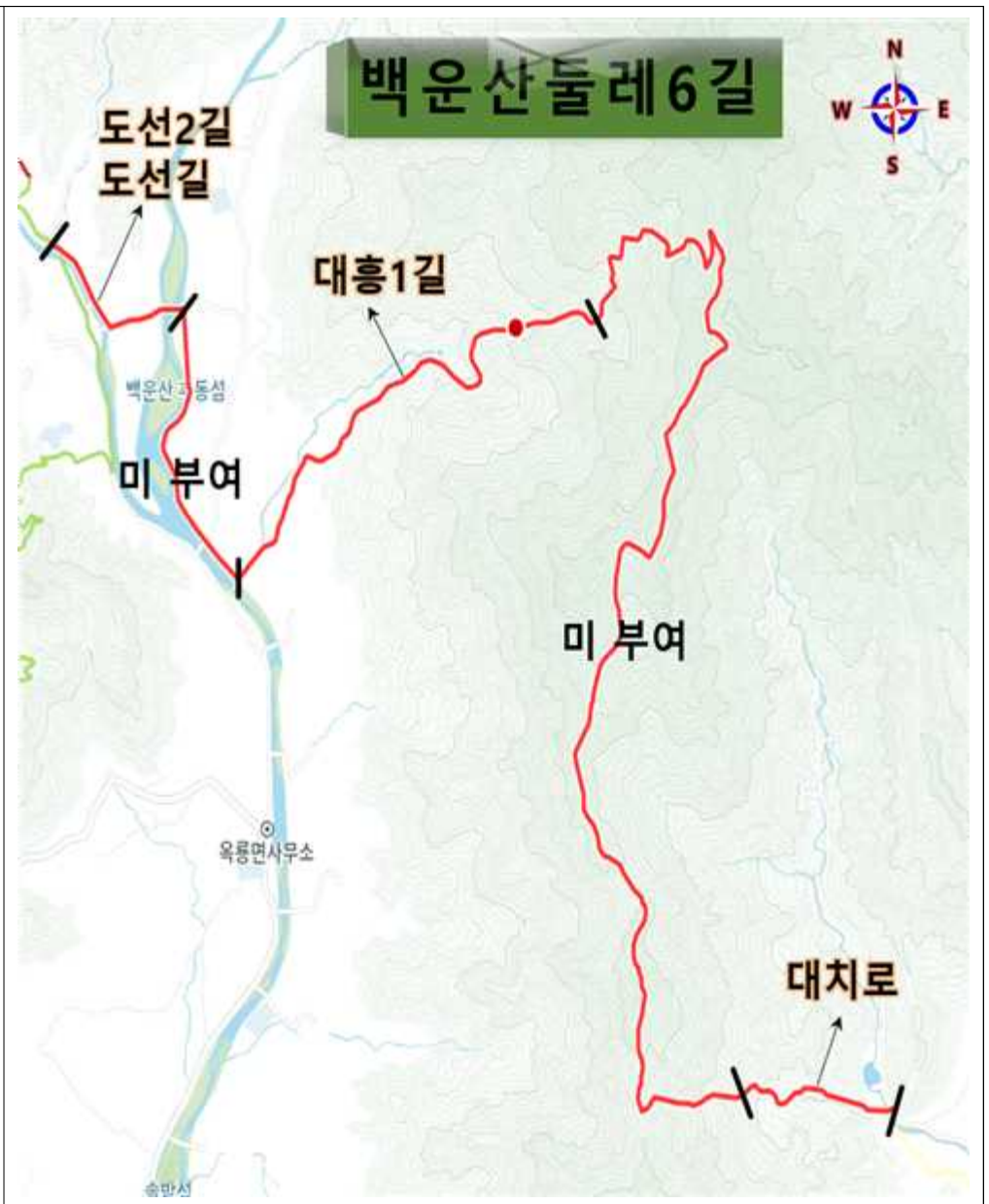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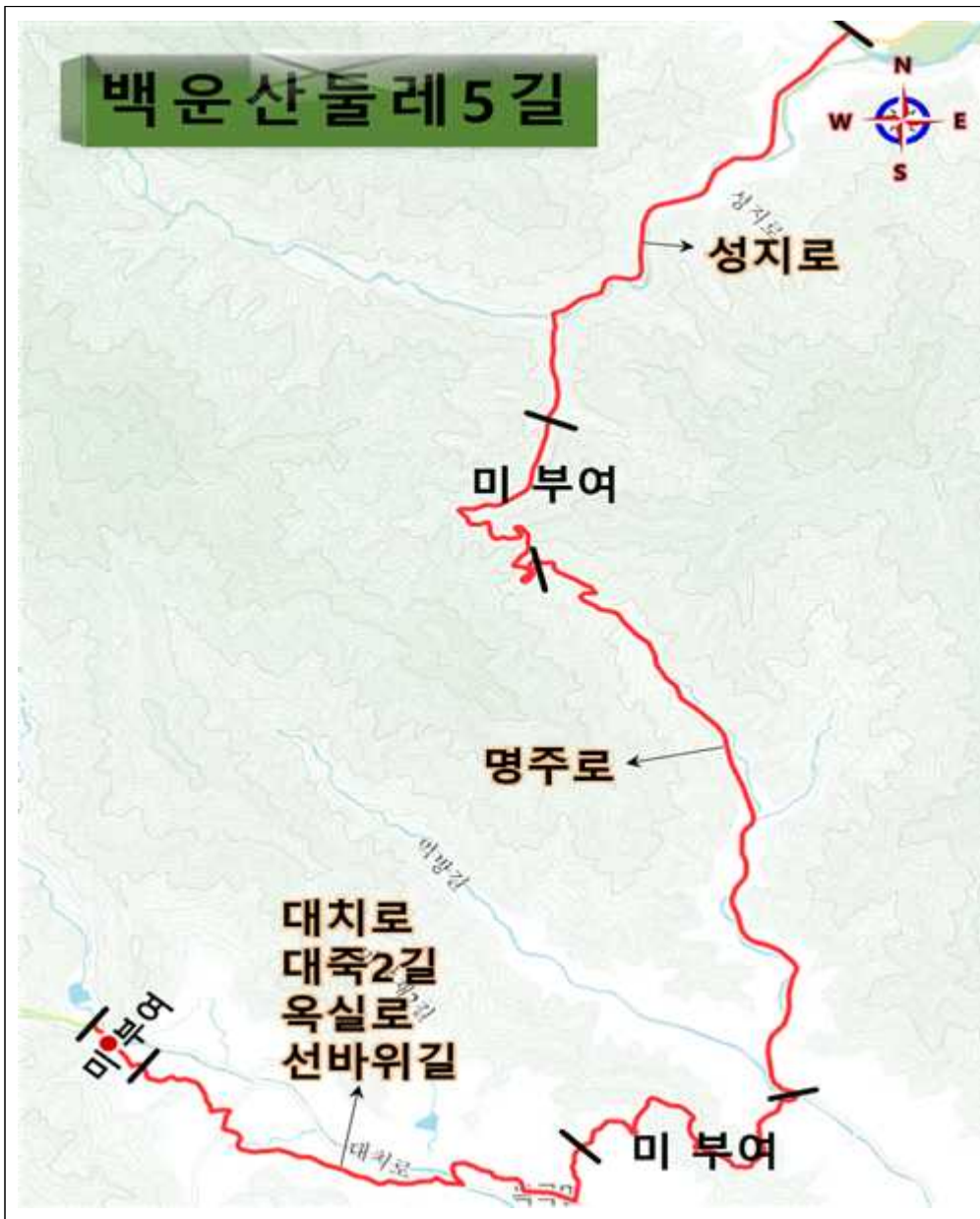
□ 도로명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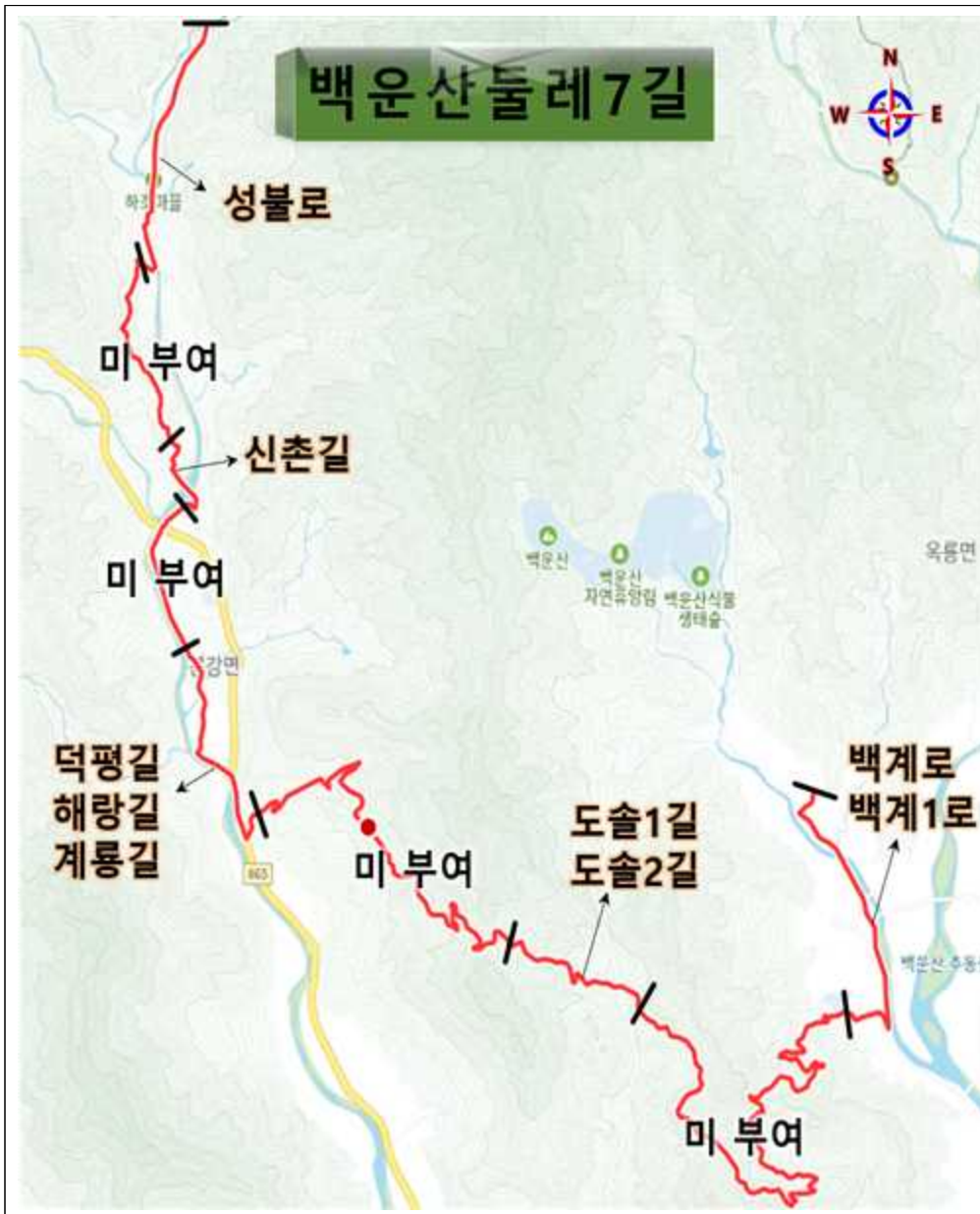
연번	예 비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 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백운산둘레3길	길	다압면	다압면 하천리 29	다압면 도사리 490-11	별 지면 도면 참조	19,852	3	20	1	993	둘레길코스 명칭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백운산둘레4길	길	다압면 진상면	다압면 도사리 490-11	진상면 황죽리 산22-1		7,121	3.6		1	356		
3	백운산둘레5길	길	옥곡면 진상면	옥곡면 수평리 114	진상면 황죽리 98-2		12,887	3		1	645		
4	백운산둘레6길	길	옥룡면 옥곡면	옥룡면 추산리 428	옥곡면 수평리 산1-1		12,537	1.5		1	627		
5	백운산둘레7길	길	봉강면 옥룡면	봉강면 조령리 산176-5	옥룡면 추산리 1504-7		16,463	2		1	823		
6	백운산둘레8길	길	봉강면	봉강면 조령리 산176-5	봉강면 조령리 산169		7,318	2		1	366		



□ 현황도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β길 6-29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단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637 외 3필지
	면적	548㎡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광양 서천 내 농업용수관로 매설공사
점용기간		2026. 9. 21. ~ 영구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수어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중동)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373-1 번지
	면적	약 0.254㎡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전신주 2본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1. 5. 14.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정산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전력관리처)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전력관리처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성황동 853 일원
	면적	약 190㎡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라멘교 설치 및 진출입로
점용기간		당초: 2006. 12. 22.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219-1 외 3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4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233, 233-1, 23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533-72	20260923	20081001	백학동으로 가는 길에서 명명
2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동 187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6길 20 (성황동)	20260923	20210210	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21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도선2길 39-15	20260923	20180523	도선길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동 684-5, 684-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용장길 207 (성황동)	20260923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정산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성황동 853 외 1필지 일원
	면적	약 13.04㎡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전력관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1. 6. 1.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